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6인 대기오염방지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동 협약을 수용하여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해양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오존층파괴물질인 할론, 냉매 등이 포함된 소화기, 냉동기 등을 선박에 새로 설치를 금지함(안 제23조의4)
- 나. 선박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이하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23조의5)
- 다. 선박으로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위해 기준이하의 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토록 함(안 제23조의6)
- 라. 선박에서 승인된 소각기로만 소각토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를 위해 육상적하시설에 배출제어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23조의8 및 제36조의2)
- 마.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선박에 검사를 시행하여 증서를 발급함 (안 제24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담당 : 해사기술담당관실 이용 서기관(☎ 3148 - 6322)

법률 제 호

해양오염 방지법 중개정 법률안

해양오염 방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중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광재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광재등 폐기물을 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거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해양 또는 대기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주류를 말한다.

가.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

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

다.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

제2조에 제15호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발생되거나 선박에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한다.
16.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을 말한다.
17.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황산화물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8.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기름·유해액체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제1항의 본문중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해양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해양오염 및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해양오염”을 각각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한다.
- 제2장 제목중 “기름·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기름·유해액체물질등 · 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한다.

제2장에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제23조의2(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 또는 대기애 이 절에서 규정한 배출규제 기준을 위반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3. 해저광물 자원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서 발생되는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23조의3(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등) ①선

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

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유지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제23조의4(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배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고의적 배출은 유지보수, 수리 또는 장치·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의 회복 또는 회수와 관련된 최소한의 누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선박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를 제거할 경우 당해 오존층 파괴물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질소산화물배출제한기준량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기관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상용 기관, 구명정용 기관 및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운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기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운전할 수 있다.

제23조의6(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등) ①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감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경우 배기가스정화장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일지를 연료유를 공급받은 시점부터 3년간 당해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연료유공급 및 확인등) ①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류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등이 기재된 연료유 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대표샘플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내에 보관하며 당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료가 소모될 때까지 대표 샘플을 1년 이상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샘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급유업자 또는 선박을 임검하여 연료유공급서 및 그 사본을 검사하여 공급된 연료와 실제 사용하는 연료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의 연료유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주관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8(선내소각) ① 누구든지 선내소각을 할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내소각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내소각기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물질을 선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국제해사기구형(IMO형) 선내소각기에서 소각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오염된 포장물질
2. 폴리염화비페닐(PCBs)
3.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쓰레기
4. 할론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PVCs)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중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및 슬러지는 주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검사) ①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폐기물오염방지설비 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 소유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
3. 임시검사 :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 행하는 검사
4. 임시항행검사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제1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승인
제29조제1항중 “제6조·제12조 또는 제17조의 규정”를 “제6조·제

12조·제17조 또는 제23조의3의 규정”로 한다.

제4장 제목중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기
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으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구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규
제 항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양하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따
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배출제어
장치 설치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운전에 관한 기록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운전에 관한 기록 및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기름 및 폐기물”을 “기름·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11호에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배출을 한 자

13.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한 자

14. 제23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15.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공급한 자

16.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17.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75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11.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및 대표 샘플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연료공급서 및 대표샘플을 제공한 자

제76조에 제8호에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9. 제2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로 지정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인도하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내소각기 를 사용하여 소각하지 않거나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내에서 소각한 자

제79조에 제14호에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5. 제2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 제2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샘플을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7.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운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6제2항은 2006년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존층파괴물질을 함유한 시설을 설치한 선박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4에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새로운 설비는 2020년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양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8년 5월 19일까지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